

제325회 정례회
2013.12.20(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12. 20 (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권기수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3년 11월 27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12월 04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12월 10일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권기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용중인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함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 중 '아파트형공장' → '지식산업센터'로 변경(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9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정비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나기성)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용 중인 조례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함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제4호, 제5호, 제9호, 제1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아파트형공장 건설업자“라 함은”을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란”으로,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5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와 제9조제1항제2호의 “아파트형공장”을 각각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각각 “인”을 “명”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p> <p>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p> <p>3.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p> <p>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p>	<p>제2조(정의) ----- -----뜻은-----.</p> <p>1. -----이란----- ----- -----.</p> <p>2. -----이란 ----- ----- ----- ----- -----.</p> <p>3. -----이란 ----- ----- ----- ----- -----.</p> <p>4. ----- -----란 ----- -----</p>

현행	개정안
<p>「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p>	<p>----- ----- -----.</p>
<p>5.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p>	<p>5. -----란 ----- ----- ----- -----.</p>
<p>6. “아파트형공장 건설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 건축허가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p>	<p>6. “<u>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u>”란 ----- ----- ----- ----- 지식산업 센터를-----.</p>
<p>7. “체인사업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p>	<p>7. -----란 「유통산업 발전법」 제 2 조 제 6 호 ----- ----- -----.</p>

현행	개정안
<p>11. "지역특화사업"이라 함은 지역경제의 여건에 비추어 자원·기술·인력 등에서 현실적, 잠재적인 비교우위가 높은 중소기업종으로서 도지사가 선정하는 사업을 말한다.</p>	<p>11. -----이^란 --- ----- ----- ----- ----- ----- -----.</p>
<p>12.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p>	<p>12. -----^란 ----- ----- ----- ----- -----.</p>
<p>13.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p>	<p>13. -----^{이^란} ----- ----- -----.</p>
<p>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 ---- ----- ----- ----- ----- -----.</p>

현행	개정안
<p>1. ~ 3. (생략)</p> <p>4. <u>아파트형공장</u> 건설사업자</p> <p>5. ~ 10. (생략)</p> <p>제9조(기금의 사용등) ① 기금중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아파트형공장</u>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지원사업</p> <p>3. ~ 8.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지식산업센터</u> -----</p> <p>5. ~ 10. (현행과 같음)</p> <p>제9조(기금의 사용등)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지식산업센터</u> ----- -----</p> <p>3. ~ 8. (현행과 같음)</p>
<p>제13조(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신설)</p>	<p>제13조(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명-----명----- -----.</p> <p>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p>

현행	개정안
	<p>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p> <p>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p>

관 계 법 령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 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지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